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42 | 2026. 7. 27. (2026. 7. 20. ~ 2026. 7. 2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①에이전틱 AI 안전·신뢰 선도, ②개방형 에이전틱 AI 실행 기반 조성, ③수요 중심의 에이전틱 AI 도입 촉진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국가 공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여 시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자들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쉽게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의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실시 근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목적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한 우회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하는 한편,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시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해당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3인)」,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긴급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

공모 신주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운행책임자·안전관리자·사업자 및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안전관리체계,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고려사항에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개발 비용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손해로 명확히 규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망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4인)**」 ,

청정수소의 개발·생산·저장·운송·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3인)**」 ,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되,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7월 30일에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무위>에서는 업무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며, <문체위>에서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제정(국토교통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1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2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4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고용노동부) 14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3인)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3인) 1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0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4인) 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의원 등 10인) 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1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의원 등 12인) 21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의원 등 14인) 2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22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2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23
-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의원 등 10인) 23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4인) 2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3인) 24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5인) 25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6
-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의원 등 10인) 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의원 등 10인) 2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방송통신(TMT)]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조세] Tax Intelligence 7월호
- [방송통신(TMT)]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TF 본격 가동
- [환경] 화학사고 예방, 기업의 관리체계가 정답
- [건설/부동산] ‘거주 중 아파트 세대 바닥의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만으로 바닥충격음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의장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것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건설/부동산]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우선수익권 증액에 대하여, 수익권 근질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 [기업인수/합병]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의 최근 동향 및 주요 쟁점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이사 후보 검증의 시대: 독립성·적격성, 안건 상정 이전에 확인한다
- [지식재산권] 국내 저명한 ‘마크 곤잘레스’의 엔젤 도안 등을 종전 라이선시가 새로운 라이선시의 권리를 침해,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발표 - 3대 추진 전략 : ❶ 에이전틱 AI 안전·신뢰 선도 ❷ 개방형 에이전틱 AI 실행 기반 조성 수요 중심의 에이전틱 AI 도입 촉진	2026-07-23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밝힘

최근 AI는 목표에 따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는 ‘에이전틱 AI’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음. 에이전틱 AI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익 구조와 서비스 방식을 바꾸고, 개인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1인 기업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등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제조·금융·공공 등 탄탄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에이전틱 AI 확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실행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되는 AI 패러다임 전환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에이전틱 AI 생태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동 이니셔티브가 마련되었음. 이번 이니셔티브는 ❶에이전틱 AI 안전·신뢰 선도, ❷개방형 에이전틱 AI 실행 기반 조성, ❸수요 중심의 에이전틱 AI 도입 촉진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추진 전략 >

❶ 에이전틱 AI 안전·신뢰 선도

에이전틱 AI는 외부 시스템과도 연동이 되고, 실제 실행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생성형 AI보다 큼. 특히, 권한 오남용, 보안 위협, 민감 데이터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에이전틱 AI의 도입·활용에 있어서 안전·신뢰 확보는 필수적임

과기정통부는 에이전틱 AI 전주기에 적용 가능한 안전·신뢰 관리 체계를 확보함. 이를 위해 개인정보·민감데이터 보호, AI 권한 관리, 목표 이탈 방지 등 에이전틱 AI 고유 위험 요소를 반영한 ‘에이전틱 AI 안전·신뢰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함

또한, 에이전틱 AI의 성능 및 안전·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AI 에이전트의 안전한 활용 및 행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신원확인 및 책임소재를 검토할 예정임

❷ 개방형 에이전틱 AI 실행 기반 조성

에이전틱 AI는 AI 모델이 외부 시스템·도구와 연결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비로소 가치를 창출함. 따라서 에이전틱 AI 시대의 경쟁력은 개방형 실행 생태계 구축 여부에 달려있음

국내 환경에 맞는 AI 에이전트 도구, 유통 체계, 기술 및 모델을 확보함. 국민이 일상이나 업무에서 반복 활용하는 생활 밀착형·고수요 AI 에이전트 서비스 및 도구 개발을 지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유통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도 지원함

또한, AI 모델-추론-에이전트-도구 등 AI 핵심 요소를 통합 관리하는 AI OS 핵심 기술을 개발함. 특히 에이전틱 AI는 멀티에이전트 협업, 도구 활용, 반복 호출 등으로 높은 연산 자원을 요구하는 만큼 토큰 효율 기반 실행 운영 기술 확보를 추진

③ 수요 중심의 에이전틱 AI 도입 촉진

에이전틱 AI는 복합적인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업무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에이전틱 AI 도입을 촉진함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로 일상과 경제활동 전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 인프라 기업, AI 서비스 개발사, 수요 기업 등 AI 가치사슬 전반이 참여하는 ‘AI 에이전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주요 산업 분야의 에이전틱 AI 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제정
- 융·복합 스마트도시산업,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도입 및 4개 대분류 체계 명확화

2026-07-24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 기업과 일자리 현황 및 성장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산업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한다고 밝힘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방범 등 도시건설·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시킨 복합산업임. 그 특성상 지금까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만으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음

예를 들어, AI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스마트파크 등 기존 분류체계에서 소프트웨어, 건설, 통신 등에 흩어져 있어서 스마트도시 산업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분야가 어떤 추이로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개발을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4~’28)」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켜 적극 추진해 왔음.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실무 업무협의를 거쳐 특수분류안을 마련하였고, 최종적으로 국가데이터처의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특수분류 제정을 확정했음

이번에 제정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는 산업의 가치사슬을 촘촘히 반영하여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 계층구조로 구성됐음

대분류는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로, 총 4개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조·관리에서부터 서비스 제공 및 판매·임대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규정했음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데이터 기반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아, ’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는 공신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며, 확보된 객관적 지표는 R&D와 예산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그리고 K-스마트도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핵심 근거로 활용할 예정임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국가 공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여 시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자들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쉽게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7-01-01 시행 예정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20991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및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독립이사의 결격기간 정비 및 등기 근거 마련,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 개최요건 및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21 시행
-------	--------------------------------	---------------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및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 금액의 상한을 상향하며, 공유재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사유 및 일반 입찰시 매각 예정가격 체감(遞減)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21 시행
-----------	--	---------------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시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기업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1호, 2026.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 지원 대상과 절차,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21 시행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요건 중 신약 연구개발 투자 금액 및 비율 요건을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7 이상으로,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50억원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7 이상에서 70억원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9 이상으로, 미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달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21 시행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2호, 2026. 1. 20. 공포, 7. 21. 및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통신판매업자 등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1. ~2026.08.31.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함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42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아울러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등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하고, 심사서류 미제출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tel:044-215-5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1. ~2026.08.31.
-----------	----------------	-----------------------------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무선국자기적합확인)하도록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4.21. 공포, 2026.10.22. 시행)됨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의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실시 근거,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수수료 신설, 거짓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는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제조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신고 의무기관을 중앙행정기관(그 감독을 받는 기관을 포함)에서 장치 사용이 가능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며, 국내에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 관리할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이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4.21. 공포, 2026.10.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전화: 044-202-4958, 팩스: 044-202-6045\)](tel:044-202-49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2.
~2026.08.3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손해배상보험·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의 내용·방법·시간,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절차와 기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가입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전화: 044-202-6425, 팩스: 044-202-6037\)](tel:044-202-6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6.07.24.
~2026.08.24.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 소형모듈원자로 특성,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범위 구체화 (안 제2조 및 제3조)

- 현행 법률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의 설비용량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모듈 형태, 제작·운송·설치 방식, 용량 확장 구조 등 SMR의 핵심 특성을 구체화
- 이에 따라 모듈 형태의 요건을 SMR 정의에 포함하고, 소형모듈원자로와 결합 또는 연계되는 부대시설·장치를 시스템 구성요소로 규정

② SMR 개발 촉진위원회 구성 (안 제7조 및 제8조)

- 촉진위원회 참여 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원자력진흥위원회 참여부처와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특구 관련 부처, 국방부 및 기획예산처로 구성하도록 함. 또한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함

③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확대 (안 제9조 및 제10조)

- 민간·공공 공동 출자회사의 형태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과 설립·운영계획서의 제출 사항을 규정하며, 회사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연구조합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기술개발 및 성과 관리, 기술의 평가·이전·사업화·활용, 인력양성, 장비 인증 및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공동구입·활용, 연구조합 운영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④ SMR 특구 지정요건 등 규정 (안 제11조)

-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중 법률상 규정된 요건 외 대학·연구소·기업을 1개 이상 두도록 하는 추가 요건을 규정하고, 특구 내 기관과 관할 시·도지사 간 협약 체결 및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요건도 갖추도록 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tel:044-202-4645) (전화: 044-202-4645, 팩스: 044-202-6023)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3.
~2026.09.0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대상 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업무지침, 실적 보고, 지정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의3)
-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4)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tel:044-201-7228) (전화: 044-201-7228, 팩스: 044-201-7235)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6.07.24.
~2026.09.02.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노동감독관을 두면서 전국적 통일성·일관성 있는 감독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통제 권한을 명시하는 등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법률 제21534호, 2026. 4. 7. 공포, 2026.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전화: 044-202-7552, 팩스: 044-862-8920\)](tel:044-202-755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6.07.15.
~2026.08.24.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97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의 시설 기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13, 팩스: 043-719-3300\)](tel:043-719-3313)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7.21.
~2026.08.31.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재가공 기준 신설 등 기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을 보완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직접 자가품질검사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결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8, 팩스: 0433-719-2450\)](tel:043-719-2458)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3.
~2026.09.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들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행위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최근 특수목적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채무보증 제한 및 투자 금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거에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이후에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인관련자 제외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목적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한 우회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하는 한편,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시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전화: 044-200-4941, 팩스: 044-200-4976\)](tel:044-200-494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3인)	2026-07-20 발의
-------	--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여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억울한 경영상 피해를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해당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3인)	2026-07-21 발의
-------	--------------------------------------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나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의 일반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중요함에도 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고지 방식으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활용 내역을 인지하기 어렵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빈발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 수단이 부족하고, 불법적인 정보 유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중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 확인을 위한 인증수단 적용’을 상향하며, 무단 정보 제공·이용 등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4항, 제29조, 제70조제3호·제4호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2026-07-23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난 상황을 사칭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지급정지요청서 서식을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하여 긴급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의3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07-24 발의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라는 대원칙 아래 세부 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5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중 하나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임

모회사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복상장을 통해 신규 자금 출자 없이도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익을 얻는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달리, 주식 가치 희석에 따른 피해를 부담하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다른 의무배정 기준과의 정합성 및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모 신주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모회사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165조의6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4인)

2026-07-22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원자력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원자력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의 핵심 기술이 대두되어 세계 각국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행정안전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2026-07-21 발의

최근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운전자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운행책임자, 안전관리자, 자율주행사업자 및 제조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운행 제한, 사고 발생 시 신고·구호 및 데이터 조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운행책임자·안전관리자·사업자 및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안전관리체계,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2026-07-20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집합건물의 다회선계약은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건물관리주체가 취하는 반면 서비스 선택의 제한 등 부담은 점유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건물관리주체가 건물 내 통신설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의 독점계약을 주도함으로써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건물관리주체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2026-07-20 발의

인공지능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국민의 기본적 삶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도입·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존중, 차별 금지, 감독체계 구축 등을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2026-07-21 발의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인식, 자율주행, 자동번역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채용, 직무배치, 성과평가, 인사관리 등 노동과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채용 이후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평가 및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되면서 고용상 차별,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종속성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2조제4호카목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2026-07-21 발의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외부의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민간데이터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4인)

2026-07-21 발의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되어 1995년 전부개정된 이래,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만을 반복해 왔음. 이로 인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해진 수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흥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초예술 분야의 산업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예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융자·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건축물 미술품 설치 시 공모방식으로 미술품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모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축물 미술품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2026-07-20 발의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법당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거나 모방하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기술 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이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장 동력을 한순간에 앗아가 기업을 도산으로 내모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행정조치는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옴

또한,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행 사법 체계 하에서는 기술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극도로 어려워 실제 배상액이 미미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실효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함. 특히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한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등 기술 개발 비용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직접적인 손실임에도 소송 과정에서 손해액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

이에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고려사항에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개발 비용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손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2026-07-22 발의

현행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뿌리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실증의 한계,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2026-07-2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7항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의의원 등 10인)

2026-07-24 발의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보건서비스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접종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최근 성인 예방접종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예방접종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정책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2026-07-20 발의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초기사업화 지원금과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등 지원책을 마련함. 아울러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가진 창업기업과 공급망 상의 전후방 연계 기업들을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지정·육성하고자 함

이에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망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3인)

2026-07-20 발의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운송·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저장·운송·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2)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026-07-22 발의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어떤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환경훼손은 그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제7호,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조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5인)

2026-07-22 발의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조사 과정이나 조치 사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이 그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조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율적 조치에만 맡기기보다 감독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감독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나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4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026-07-24 발의

현행법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6-07-24 발의

최근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와 노동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종래의 노동법체계로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직종별 유형에 따라 노동기본권 중 일부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지만, 이러한 개별적·파편적 조치만으로는 다변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종전의 노동법체계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의 개념을 도입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토대가 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2026-07-24 발의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형식상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성 분쟁의 경우에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플랫폼 노동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져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구조임

이에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되,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관계 법령의 정비를 이 법 시행 전에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026-07-21 발의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입주민을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특성상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특히 고속도로 인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저층주거지역에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광역상수도 및 고압전신주 등으로 인하여 방음벽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현장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7/27(월) 10:00	- 간사 선임의 건 등
정무위	전체회의	7/28(화) 10:00	- 비금융 업무보고
	전체회의	7/29(수) 10:00	- 금융 업무보고
문체위	전체회의	7/30(목) 10:00	-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7/27(월) 10:00	- 간사 선임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7/27(월) 14:00	LPG판매업 현안 간담회	오세희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7/28(화) 07:30	Agentic AI 국회 조찬 포럼	조인철·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7/28(화) 10:00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 상 강화	김재원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7/28(화) 10:00	피지컬 AI 시대, 자율주행은 어떻게 일상이 되는가?	엄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7/29(수) 10:00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소희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7/30(목) 08:30	남인순 국회의장의 모닝 디퍼닝: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산업경쟁력 확보 정책과제	남인순 의원실	국회 본청 316호
자료집 등	7/27(월)	「Data+」 제2026-12호(통권 제36호)	국회도서관	
	7/29(수)	「금주의 서평」 제2026-29호(통권 제788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7/20(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9호(통권 제33호)	국회도서관	
	7/2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4호(통권 제302호)		
	7/22(수)	「금주의 서평」 제2026-28호(통권 제787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7/20(월)	방송통신(TMT)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7/20(월)	방송통신(TMT)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7/21(화)	조세	Tax Intelligence 7월호
7/21(화)	방송통신(TMT)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TF 본격 가동
7/22(수)	환경	화학사고 예방, 기업의 관리체계가 정답
7/22(수)	건설/부동산	‘거주 중 아파트 세대 바닥의 바닥충격을 측정 결과’만으로 바닥충격을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7/23(목)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의장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것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7/23(목)	건설/부동산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우선수익권 증액에 대하여, 수익권 근질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7/24(금)	기업인수/합병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의 최근 동향 및 주요 쟁점
7/24(금)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7/24(금)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이사 후보 검증의 시대: 독립성·적격성, 안건 상정 이전에 확인한다
7/24(금)	지식재산권	국내 저명한 ‘마크 곤잘레스’의 엔젤 도안 등을 종전 라이선시가 새로운 라이선시의 권리를 침해,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인용 받은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